

제주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548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강인철, 전우석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9.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은 13,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B은 2016. 4. 7.부터 2016. 12. 30.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 피고의 어머니이다.

○ B은 2017. 5. 15. C의 2016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5,439,5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41,024,723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이 때 B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이었음을 확인하고 2019. 12. 2. 원고 산하 정읍세무서장이 B에게 종합소득세 389,861,235원을 고지, 결정하였고, B은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가산세 포함 442,492,3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 B은 2016. 3.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고 계약금 1,38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19. 9. 9. 아들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증여가액은 1,380만 원이며,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 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므로(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원고의 B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6.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B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세무사를 통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몰랐다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이 약 2년 7개월 지난 2019. 12. 2.에서야 이루어져 B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도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B의 사해의사 추정을 반복할 수 없다.

3)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매수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변경하여 주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그 권리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 시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분양권의 시가는 1,380만 원이고 그 이후 피고가 분양대금을 추가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1,3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1,380만 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3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3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